

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3. 7. 7 선고 2023가합2251 판결 [공사대금청구의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3. 5. 26.

판 결 선 고 2023. 7. 7.

주 문

1. 피고는 C,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,21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. 5. 7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2020. 3. 24. 의사들인 피고와 C, D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E병원(변경 전 상호 'F병원',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'이 사건 병원'이라 한다)의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(이하 '이 사건 선행 공사'라 한다)를 525,000,000원에 수급하여 2020. 5. 2.경 공사를 완료하였고, 이어서 이 사건 병원의 조명 설치공사(이하 '이 사건 공사'라 한다)를 수급하여 이 사건 공사도 완료하였다.

나. 원고는 2020. 11. 20. 피고, C, D를 상대로 이 사건 선행 공사의 미지급 대금 135,000,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(이 법원 2020가단2284호, 이하 '이 사건 선행 소송'이라 한다)를 제기하였고, 이 법원은 2021. 7. 21. 이 사건 선행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을나 제2호증의 기재,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당사자의 주장

가. 원고

원고는 피고, C, D로부터 구두로 공사대금 41,210,000원에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였고, G로부터 조명을 납품받아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. 그런데 피고, C, D는 G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10,000,000원을 직불한 것 이외에는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, 피고, C,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잔존 대금 31,210,000원(= 41,210,000원 - 10,000,000원)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

피고는 C의 남편이자 이 사건 병원이 소재한 건물의 소유자인 H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.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직접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공사대금청구에 응할 수 없다.

3. 판단

가.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체결주체에 관하여

먼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병원 조명 설치에 관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체결주체가 누구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,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 내지 7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,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은 피고, C, D라고 봄이 타당하다.

- 1)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병원 운영에 필요한 조명 설치공사로서 피고, C, D는 이 사건 병원의 공동운영자이다.
- 2) 피고 및 D는 이 사건 선행 소송에서 'H가 이 사건 선행 공사도급계약의 체결주체이다'라는 주장을 하였으나, 이 사건 선행 공사도급계약서에 발주자가 '이 사건 병원 대표자 C'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위 주장은 배척되었고, 피고, C, D가 공동으로 이 사건 선행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으로 인정되었다.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으나, 이 사건 선행 공사는 이 사건 병원의 '전기 및 정보통신공사'이고 이 사건 공사는 이를 토대로 한 '조명 설치공사'로서, 건물의 사용주체인 피고, C, D가 이 사건 선행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각 공사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공사로 동일하게 건물의 사용주체가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다.
- 3) D는 대구지방법원 2021회단123호 회생절차에서 회생채무자로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채무액 31,210,000원을 시인하였고, C은 같은 법원 2021회단128호 회생절차에서 회생채무자로서 위 채무의 존재를 부인하였다가 2023. 2. 6. 종전 입장을 번복하여 '착오로 인해 부인한 것으로서 회생채무로 인정한다'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·제출하였다.
- 4)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의 일부로 10,000,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, 이 사건 병원의 공동운영자 중 1인인 C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2020. 8. 11. 1,000만 원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.

나.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

갑 제1, 2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는 피고, C, D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41,210,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사실이 인정되고,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0,000,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. 따라서 피고는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C,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미지급 대금

31,21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인 2022. 5. 7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김상윤, 판사 김재경, 판사 강민기